

의안번호	2216871
의 퇴 인	정을호 의원
회 답 일	2026.04.14.
추계번호	26C09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3 (인권센터)	(제3항)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u>보조하여야 한다.</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9조의3 (인권센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인권센터에 상담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센터 지원 의무를 명시함
- 현행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학교는 구성원의 인권 보호, 권익 향상 등을 목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의 비중이 낮음¹⁾
 - 2025년 공시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은 평균적으로 3.1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전담인력은 0.7명임

1)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이에 개정안은 인권센터의 상담·조사 인력을 분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센터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표] 인권센터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전체
총 직원 수	3.6	2.6	2.2	3.1
전담인력	1.2	0.2	0.2	0.7

자료: 대학정보공시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 범위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센터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인권센터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재함
 - － 교육부는 대학이 재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조직·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다만, 한국대학교육협회의 평가·인증 제도를 통해 전반적인 인권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기관별로 조직 규모, 인력 운영 등 여건이 상이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추계가 곤란함
 - － 참고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상 인권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2021.3.23.)에 따라 '22~'23년 인권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나, 현재는 사업이 폐지됨
- * [참고자료] 대학 인권센터 지원 사업('22~'23) 집행 실적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대학 인권센터 지원 사업('22~'23) 집행 실적

[참고표 1] 2022년 사업 집행 실적(7개교)

(단위: 백만원)

구분	가톨릭 관동대	전국대	경북대	서울 과기대	중앙대	창원대	충남대
교부액	77.5	77.5	77.5	70	70	77.5	50
집행액	77	77	77	68	70	76	46

자료: 교육부

[참고표 2] 2023년 사업 집행 실적(10개교)

(단위: 백만원)

구분	가톨릭 관동대	경북대	대구 한의대	서울 과기대	전남대	전주대	중앙대	창원대	충북대	한국외대
교부액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집행액	80	66	73.8	74.2	79	61	79.1	79.6	67.9	64.1

자료: 교육부